

## 2005년도 세탁 연간 예정 수량

예산금액 : ₩23,544,000(금이천삼백오십사만사천원정)

예정수량

- 27교육과정 1,613명 SET이상

- 경비실, 당직실 월 2회이상

- 과정별 훈련복 세탁시

1회 최대수량 : 이불 외 3종 220명분

단가계약 품목

품 명	규 격	단 위	단 가 (원)
메트리스 카바	면 류	장	
모 포	밍 크	"	
모 포	카시미롱	"	
이 불	여 름 용	"	
이 불	겨 울 용	"	
커 트	사계절용	"	
베게카바	면 류	"	
훈련복	상 하	벌	
훈련복 수선	상 하	벌	

※ 단,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
# 2005년도 세탁 단가계약

중앙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침구류등 세탁물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2005년도 세탁예정 품목에 대하여 미리 그 단가를 정하고 본 계약서 각 조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 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○○○ 대표 ○○○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“갑”과 “을”은 2005년도 연간 중앙소방학교가 세탁의뢰 할 세탁품목별 단가 및 계약조건을 정하여 상호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한다.

## 제2조 (계약단가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세탁 의뢰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단가표에 의하여 세탁 공급한다.

품 명	규 격	단 위	단 가 (원)
메트리스 카바	면 류	장	
모 포	밍 크	”	
모 포	카시미롱	”	
이 블	여 름 용	”	
이 블	겨 울 용	”	
커 튼	사계절용	”	
베게카바	면 류	”	
훈련복	상 하	벌	
훈련복 수선	상 하	벌	

※ 단,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
### 제3조 (계약보증금)

“을”은 계약이행 담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중 1회 예상계약금액 중 최대금액(금이백만원정)의 10%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(성실의무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세탁물의 세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하며, 납품할 때에는 “갑”이 정하는 소속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]

### 제5조 (손실 및 손해보상)

“을”은 작업중 세탁물을 손실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“갑”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“갑”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 제6조 (지체상금)

“을”은 24시간이내 “갑”에게 세탁물을 세탁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지체시 계약금액의 1,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“갑”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단, 사전협의를 있는 경우는 협의 내용에 따른다.

### 제7조 (위임)

“을”은 본계약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사전에 “갑”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8조 (계약의 중단)

“을”이 제4조의 성실의무를 태만하였다고 인정될 때와 “갑”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“갑”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

**제9조 (유효기간)**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~ 2005. 12. 31까지로 한다.

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이 각각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**2005. 1. .**

(갑) 주 소 : 충남 천안시 유량동 36번지  
상 호 : 중앙소방학교 재 무 관 (인)

(을) 주 소 :  
상 호 : (인)